

헌법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임무)

1. 본회는 법규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현의할 수 있다.
2. 총회가 개정하기로 의결한 법규의 조문을 정리한다.
3. 총회 폐회 기간 중 법규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4. 총회가 연구를 위임하면 그 결과를 법규 개정안은 현의하고, 기타 안건은 보고서로 제출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조직)

본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가 선정하는 노회별 각 1인씩, 여성위원 1인으로 하며 목사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4조 (위원)

본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조별로 3반으로 나눈다. 총회 후 정기회부터 기산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정기회에서 위원장 1인, 서기 1인의 임원을 투표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회의)

본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한다.

제7조 (개회성수 및 의결정족수)

본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요하며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서면결의)

본회는 필요에 따라 안건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유권해석)

본회의 법규 해석은 회의 결의로만 한다.

제10조 (분과위원)

본회는 필요한 연구를 위해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6년 9월 제60회 총회 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9년 9월 제84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